

##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인원

| 근무<br>처   | 임용<br>직급               | 채용<br>분야  | 채용<br>인원 | 근무<br>기간 | 담당직무 내용                                                                                                                                                                                                                                                                                                |
|-----------|------------------------|-----------|----------|----------|--------------------------------------------------------------------------------------------------------------------------------------------------------------------------------------------------------------------------------------------------------------------------------------------------------|
| 의회<br>사무국 | 지방행정<br>주사보<br>(일반임기제) | 정책<br>지원관 | 3명       | 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li><li>■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li><li>■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li><li>■ 의원 연구단체 등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자료 작성 등 지원</li><li>■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li></ul> |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직무 관련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분 야                         | 자 격 요 건                                                                                                                                                                                                                                                                                                                                                                                                                  |
|-----------------------------|--------------------------------------------------------------------------------------------------------------------------------------------------------------------------------------------------------------------------------------------------------------------------------------------------------------------------------------------------------------------------------------------------------------------------|
| 정책지원관<br>(지방행정7급,<br>일반임기제) | <p>&lt;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 관련분야 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기업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의 행정, 경영, 예산회계, 법률, 지방자치, 복지, 환경, 보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보조, 단순노무 등 불인정)</p> <p>[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p> |

※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가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4. 채용조건

- 근무기간 : 2년(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요일, 1일 8시간)

####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액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64,776천원 | 46,006천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가.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
| 2023. 5. 8.(월)<br>~ 5. 12.(금) | 서류전형 | -                              | 2023. 5. 22.(월)<br>남구(의회)홈페이지,<br>나라일터 공고 |
|                               | 면접시험 | 2023. 5. 26.(금)<br>시간, 장소 개별통보 | 2023. 5. 31.(수)<br>남구(의회)홈페이지,<br>나라일터 공고 |

※ 상기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 나.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불합격 기준 미해당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별로 각각 상, 중, 하 점수로 평정하여 평정결과(항목 점수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한 때 면접 포기자 및 불참자

#### ○ 최종합격자 발표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 남구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합격자 개별통보)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7. 원서접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3. 5. 8.(월) ~ 5. 12.(금) 09:00 ~ 18:00 [휴일, 점심시간(11~12시)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방문접수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처에 방문 제출

\* 부산광역시남구 수입증지(지방행정주사보 : 7천원)를 응시원서에 붙임(부산광역시남구청 민원실)

- 등기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 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등기우편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 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접 수 처 : 부산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의회 1층 의정팀(우편번호 48452)

## 8.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구 분                                   | 내 용                                                                                                                                                 |
|---------------------------------------|-----------------------------------------------------------------------------------------------------------------------------------------------------|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br>(별지 제1호서식)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 응시수수료<br>- 7,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br>※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자 증명서 제출) |
|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 4.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 A4 2매 이내로 작성                                                                                                                                      |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br>(별지 제5호서식)           |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3매 이내로 작성 (총 4매 이내)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br>(별지 제6호서식)   | ○ 자필 서명 필수                                                                                                                                          |
|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br>(별지 제7호서식)   | ○ 자필 서명 필수                                                                                                                                          |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br>(별지 제8호 서식) | ○ 자필 서명 필수                                                                                                                                          |
| 9.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br>(별지 제9호 서식)       | ○ 자필 서명 필수                                                                                                                                          |

| 구 분                                                                                                 | 내 용                                                                                                                                                                                                                                                                                                                                                                                                                                                                                                                                                       |
|-----------------------------------------------------------------------------------------------------|-----------------------------------------------------------------------------------------------------------------------------------------------------------------------------------------------------------------------------------------------------------------------------------------------------------------------------------------------------------------------------------------------------------------------------------------------------------------------------------------------------------------------------------------------------------|
| <p>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br/>(별지 제10호서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li> <li>○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li> <li>○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li> <li>○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li> <li>○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li> <li>○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li> <li>※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li> </ul> |
| <p>11. 경력 확인서류 사본 1부<br/>(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br/>- 국민건강보험공단(<a href="http://www.nhic.or.kr">www.nhic.or.kr</a>)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a href="http://www.ei.go.kr">www.ei.go.kr</a>)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li> </ul>                                                                                                                                                                                                                                                                                                                       |
| <p>12.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br/>☞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증은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단,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는 필수서류임</li> <li>○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논문 요약서 1부<br/>-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li> <li>○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필요</li> <li>※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li> </ul>                                                                                                                                                                                                                                                                 |
| <p>13. 기타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br/>(자격증, 연구실적, 상훈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li> <li>○ 자격증, 연구논문 요약서 등</li> <li>○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li> <li>○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li> <li>※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li> <li>※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li> </ul>                                                                                                                                                                                                                                                                         |

##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 10.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 수행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남구의회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의정팀(☎051-607-6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첨). 끝.